
공사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1. 1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경 영 지 원 실

1

과업 개요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추진목적

- 기존 신규 차량 임차 계약 만료에 따른 신규 임차계약 추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 및 제94조

나. 용역개요

□ 용역명 : 공사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 추진기간 : 임차 개시일로부터 3년 (36개월)

□ 추진방법 : 공개경쟁입찰계약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

□ 과업내용 : 업무용 차량(저공해차) 5대 장기대여 및 관리 용역

차종(모델명)	수량	금액 비율	지역	비고
제네시스 Electrified G80	1대	56%	서울 영등포구	신차
아이오닉5	3대	32%		
쏘렌토 하이브리드	1대	12%		

□ 소요예산 : 일금 일억육천칠백사십만원 (167,4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며, 입찰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자동차대여 사업자(업종코드: 145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상세 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2

과업 지시서

1. 임차차량 납품장소 및 기한

- 납품장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hree IFC)
- 납품기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확약서 제출)

2. 임차차량 규격서

차 종	GENESIS ELECTRIFIED G80		임차기간	36개월
기본사항 및 옵션	외장컬러	메탈릭(유광) 비크블랙	구동타입	e-AWD
	내장디자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 옴시디언 블랙 모노톤		
	옵션	파플러 패키지	솔라루프	컨비니언스 패키지
		2열 콤포트 패키지	뒷자석 듀얼 모니터	차량보호 필름
빌트인 캠 패키지		차량 유리 선팅		
수 량	1대 (사전에 등록·운행되지 않은 신규차량)			
기 타	약정주행거리 무제한, 임차보증금 없음			

차 종	아이오닉5 PRESTIGE(롱레인지)		임차기간	36개월
기본사항 및 옵션	외장컬러	팬텀 블랙 펄	구동타입	2WD
	내장디자인	블랙 모노톤		
	옵션	빌트인 캠	차량 유리 선팅	
수 량	3대 (사전에 등록·운행되지 않은 신규차량)			
기 타	약정주행거리 무제한, 임차보증금 없음			

차 종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프레스티지		임차기간	36개월
기본사항 및 옵션	외장컬러	스노우 화이트 펄	구동타입	2WD
	내장디자인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		
	옵션	6인승	2채널 블랙박스	차량 유리 선팅
수 량	1대 (사전에 등록·운행되지 않은 신규차량)			
기 타	약정주행거리 무제한, 임차보증금 없음			

3**차량 임대차 계약 특수조건****제1조(총칙)**

본 차량 임대차 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간 체결된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차량의 임차기간은 “계약상대자”가 차량을 납품한 후 임차 개시일 (차량인수인계서상의 납품일 기준)로부터 36개월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내에 납품한 차량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임차기간 동안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납품기일)

① 차량의 납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납품일 및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 등) 없이 요구한 기일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4조(임차차량의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책임, 종합),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모델은 각 차종별 제작사의 기본모델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임차차량의 약정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하며,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은 없음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익일에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일 15일 전에 “발주처”에게 계약만료일을 통보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차량 불량으로 인해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점검 및 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해 격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발주처”의 임차 차량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타이어 압력 및 구멍 체크 등)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차량의 정기검사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 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요청 시 권장주기 이전에 소모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처”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⑤ “발주처”가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별도 정비소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처”가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본조 제1항 및 제5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발주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 상의 자기 차량 손해보장을 받으며 “발주처”가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10만원으로 한다.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운전자 과실이 명확한 경우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가장 빠른시간 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48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일일 계산하여 “발주처”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 가입)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은 차량 인도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인 배상 I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 II : 무한
3. 대물 배상 : 1억원
4. 무보험차 상해 : 2억원
5. 자기신체 사고 : (사망) 1억원, (부상) 1천5백만원
6. 자차 보험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8. 차량사고 시 사고처리 및 긴급대차 서비스 지원
9. 특약 : (eG80 및 아이오닉5) 만 26세 이상 “발주처” 직원
(쏘렌토) 만 21세 이상 “발주처” 직원

제8조(임차료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임차료는 후불지급을 원칙으로 매월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산출하여 명세서와 함께 청구하며, 매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발주처”는 청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 관련 등록 제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고장수리비용 등)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부가가치세와 함께 임차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해지 시 사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 30일 기준으로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정산한다.

제9조(권리의무 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와 “발주처”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는 즉시 “발주처”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보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따라 입수한 “발주처” 측의 업무정보, 기밀,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만일 유출되어 “발주처”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처”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은 입은 경우

②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발주처”는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유상 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차량의 구조를 변경 및 개조하는 행위
5.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행위(단, 계약연장 합의 시 제외)

제13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본 계약서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계약이 가능하다.